

# 제13회 인명구조사 1급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

「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제13회 인명구조사 1급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9월 7일

소방청장

## I. 시험개요

### 1 시험일정

원서접수	필기시험	필기 합격발표	실기시험	최종 합격발표
9.20.(화)~9.23.(금)	10.8.(토)	10.14.(금)	11.14.(월)~11.25.(금)	12.16.(금)
119고시	중앙소방학교 제주소방교육대	119고시	중앙소방학교	119고시

※ 원서접수 결과 응시인원 등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 시행할 수 있음

### 2 응시자격

가. 응시대상: 소방공무원

나. 응시자격: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구분	응시자격
필기시험	① 인명구조사 2급을 취득하고 인명구조사 1급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 받은 사람 ② 인명구조사 2급을 취득하고 소방공무원으로 근무경력 3년이 경과한 사람 ※ 근무경력은 파견·휴직, 직위해제 등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경력을 말함 ※ 근무경력 3년 기준일은 원서접수일(시작일)까지로 함
실기시험	①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 필기시험 면제자: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2년까지 응시가능 * 2년의 기준은 필기시험 합격 발표일로부터 원서접수일(시작일)까지로 함 ③ 응시기한이 도래한 해에 시험이 시행되지 않은 사유로 응시기한이 경과 된 경우 이어지는 실기시험 1회까지는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함

## II. 원서접수 (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)

### 1 원서접수 (119고시 인터넷 접수만 가능)

필기시험 면제자도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하여야 실기시험 응시 가능

가. 접수기간: 9. 20.(화) 10:00 ~ 9. 23.(금) 18:00 / 4일간

※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 가능

나. 접수방법: 119고시(<http://119gosi.kr>) 접수

다. 수 수 료: 없음

라. 접수확인: 원서접수 완료 후 접수확인(로그인 → 마이페이지)

#### ☑ 원서접수 유의사항

- 사진기준: 반명함(3cm×4cm), 사진 파일(JPG, GIF, PNG, DMP), 해상도(100DPI 이상)
- 사진등록: 응시자 본인을 특정할 수 없는 사진\* 등록 시 불이익 발생
  - \* 배경이 있는 사진, 스냅사진,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, 얼굴이 잘려 나온 사진, 동물·식물 사진,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
- 응시자 개인정보 불일치(허위 작성, 오기, 누락), 연락 불능, 응시자격 미충족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
- 잘못된 정보를 입력한 응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

### 2 응시자격 조회

가. 조회기간: 9. 26.(월) ~ 9. 29.(목) / 4일간

나. 조회대상: 원서접수자

다. 조회기관: 소방청(교육훈련담당관) 및 응시자 소속기관

라. 조회내용: 응시자격 적합여부(근무경력, 교육수료 등)

### 3 응시표 출력

가. 출력일시: 10. 5.(수) 10:00 ~

나. 출력대상: 원서접수자

다. 출력방법: 119고시 로그인 → 마이페이지 → 응시표 출력

#### 1 필기시험

- 가. 장소공고: 9. 30.(금) 14:00 / 119고시
- 나. 시험일시: 10. 8.(토) 10:00 ~ 10:40 (40분) ※ 10:30분까지 입실 완료
- 다. 시험장소: 중앙소방학교, 제주소방교육대(응시인원에 따라 결정)
- 라. 시험대상: 필기시험 응시자격을 충족한 사람
- 마. 준비물: 응시표, 신분증, 필기도구(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)
- 바. 시험범위: 인명구조사 1급 교범 및 문제은행\* 內
  - \* 2022년부터 문제은행 비공개 운영
- 사. 시험문항: 객관식 4지 1선택형 40문항(비공개 40)
  - ※ 필기시험 문제지 및 답안지는 전량 회수 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간 보관

#### 2 출제문제 문의

- 가. 운영기간: 10. 8.(토) 14:40 ~ 10. 9.(일) 24:00
- 나. 문의방법: 원서접수사이트 119고시에서 신청
- 다. 자격요건: 필기시험 응시자만 가능
- 라. 문의절차: 로그인 → 질의응답 → 문의서 첨부\*
  - \* 응시자는 인명구조사 필기시험문제 문의서 작성 첨부
- 마. 문의내용: 출제문제 오류, 복수정답, 정답없음 등 문의
  - \* 시험문제 공개 요구 또는 전화 문의는 받지 않음

#### 3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

- 가. 공고일시: 10. 14.(금) 14:00
- 나. 공고장소: 119고시
- 다. 공고내용: 필기시험 합격자 및 실기시험 일정 등
- 라. 합격기준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
  - ※ 필기시험 합격자는 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 통보(응시번호, 이름, 소속, 연락처 등)

## IV. 실기시험 (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)

※ 세부계획 별도 수립

### 1 실기시험 접수

- 가. 신청기간: 10월 중(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안내 예정)
- 나. 신청방법: 119고시 접수(희망일별 선착순 접수)
- 다. 신청대상: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  
※ 신청일 미배정자는 중앙소방학교에서 임의배정(확정 후 변경 불가)
- 라. 응시표 출력: 11. 7.(월) 10:00 ~

### 2 실기시험

- 가. 시험기간: 11. 14.(월) ~ 11. 25.(금) ※ 응시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나. 시험장소: 중앙소방학교 및 권역별 시행(예정)
- 다. 응시대상: 필기시험 합격자, 필기시험 면제자
- 라. 실기항목: 수난구조 등 구조기술평가 9개 항목

구분		평가항목	
구조기술평가	수난구조	①중량물 들고 떠 있기 ③수상인명구조	②스킨 탈부착 후 인양작업 ④수중구조
	로프구조	⑤구조대원1 ~ 구조대원4 * 평가관 지정 또는 추천	
	화학구조	⑥유해물질 대응. I	⑦유해물질 대응. II
	도시탐색	⑧구조물 안정화	⑨중량물 인양 및 이동

- 마. 준비물품: 응시표, 신분증, 개인장비, 실기평가표\*  
\* 실기평가표에 응시번호, 성명, 자필 서명 기재 후 시험운영본부 제출
- 바. 합격기준: 세부항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항목별 40점 이상 득점하고, 전 항목 평균은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함

## V. 최종합격자 공고 (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)

- 가. 최종합격자 공고일시: 12. 16.(금) 14:00 / 119고시 게시
- 나. 자격증 발급: 12. 30.(금) 한 / 소방청에서 자격증 제작 후 배부

## VI. 기타 안내사항

### 1 일반사항

가.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

#### ☑ 신분증 인정 등 유의사항

- ▶ 인 정: 소방공무원증, 주민등록증,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, 운전면허증, 기간만료 전 여권
- ▶ 불인정: 자격수첩,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, 신분증 사진
- ※ 응시표 출력 후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지참할 것

나. 응시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시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 (이후 입장 불가), 공고된 시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응시 포기로 간주함

#### ☑ 시험장 폐쇄시간 및 유의사항

- ▶ 시간 기준: 10:00 시험은 09:00에 개방하여 09:30:00까지 입장 가능  
09:30:01부터 시험실시 건물 주 출입구 폐쇄
- ▶ 입구 기준: 자격시험기관이 지정한 출입구 기준
- ▶ 응시자는 시험장의 위치, 교통편, 이동 소요 시간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, 시험 전날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음
- ▶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출입이 불가함

다. 시험공고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119고시 및 시도 소방본부 누리집에 공고함. 공고내용 및 공지사항(시험일시, 장소 등)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

※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정부 방침에 따라 시험 일정이 긴급하게 변경될 수 있음

라. 모든 시험은 우천, 강풍 등에도 예정대로 시행되며,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시험장소와 일정 등을 공지함

마. 응시자는 시험장 물품 등 파손,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, 소지품 분실 등 시험장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람

바. 응시자격 요건이 적합하지 않은 응시자의 시험결과는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, 책상, 벽 등에 필기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

## 2 답안지 작성 및 부정행위 등 안내

- 가. 개인별 성적은 답안지 전산 판독 결과에 따르며, 답안지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반영되지 않음
- 나. 답안은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“●”로 표기하여야 하며,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때는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음
- 1) 표기한 답안을 수정할 때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어야 함 (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)
  - 2)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 또는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발생하는 판독 결과 등에 대한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

### ☑ 채점오류(귀책 사유) 사례

- ▶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
- ▶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
- ▶ 답안지 여백 낙서, 훼손 등으로 채점 불가능한 경우
- ▶ 예비표기 하여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
- ▶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이외 필기구(연필, 샤프, 적색펜 등) 사용한 경우
- ▶ 불량 또는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사용으로 마킹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
- ▶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(■■■■)를 훼손한 경우
- ▶ 수정테이프 사용 후 번짐, 뜯김 등이 발생한 경우

<보기> 올바른 표기 : ● 잘못된 표기 : ○ ⊗ ⊙ ⊖ ⊕ ⊗ ⊘ ⊙ ⊚ ⊛

## 다. 답안지는 본인의 응시표를 확인 후 직접 기재해야 함

- 1) (필적감정용 기재) 예시문과 동일한 내용을 본인의 필적으로 직접 작성
- 2) (자필성명) 본인의 한글 성명을 정자로 직접 기재해야 함.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불이익(당해시험 무효 처리 등)을 받을 수 있음
- 3) (교체답안지 작성) 답안지를 교체하면 반드시 필적감정용 기재란, 자필성명, 응시번호, 생년월일 등을 빠짐없이 작성(표기)해야 하며 작성한 답안지는 1인 1매만 유효함

라.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 모든 통신기기나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문제지 배부 후 발견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됨

- 1) 휴대용전화기, 디지털카메라, MP3 플레이어, 전자사전, 카메라펜, 카메라 안경, 라디오,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, 무선호출기, 이어폰, PDA, 스마트워치, 전자계산기, 전산기기, 테블릿 PC 등
- 2) 통신장비를 소지한 응시자는 시험실시 전 전원을 끈(off) 후 시험실 전면에서 제출하여야 하며, 전면에서 제출하지 않았다가 문제지 배부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처리됨

마. 문제지 배부 후 시험 시작 전에 문제지를 열람하는 행위,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

바. 응시자는 문제지의 과목순서대로 답안지에 표기해야 하며,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때도 답안지에 기재된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람

사. 시험시간 관리의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해야 함

아. 시험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를 마시는 것을 자제할 것

※ 배탈·설사 등 불가피하게 시험을 중단할 때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,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해야 함

자. 답안지에 성명, 생년월일, 응시번호, 시험감독관 서명, 필적 감정용 기재란을 기재하지 않아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무효 답안으로 처리함

#### ☑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무효답안처리 기준

- 부정행위자 조치: 「소방공무원 임용령」 제51조 준용
- 시험지(문제지, 답안지)가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에 입실하는 행위
-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 간에 대화하는 행위
-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 간에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
-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
-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
- 타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행위
-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

차. 시험(필기·실기)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함

카. 감염병 확산 방지와 안전한 시험 운영을 위하여 응시자(본인)의 확진 및 자가격리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시행하고자 함. ※ 코로나19 감염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**【코로나19 별도 시험장 운영 안내】**

1. (대 상) 시험응시자 중 아래 사항의 하나 이상 해당하며 신청방법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한 사람

- ① 코로나19 확진 또는 자가격리자\*로 시험일까지 격리 중인 응시자  
\* 자가격리자: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시설 내 접촉자
- ② 신속항원검사(자가진단키트) 양성이고, 시험일까지 코로나19 PCR 검사(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)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응시자

2. (신청기간) 2022. 10. 7.(금) 18:00까지 응시 신청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응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

3. (신청방법)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유선통보(044-205-7294) 및 e-메일 제출(rok409@korea.kr)

4. (제출서류)

- ① (공통) 코로나19 별도시험 응시 신청서【서식 3】
- ② (공통) 개인정보 수집·활용 동의서【서식 4】
- ③ (병원입원·생활치료센터 입소 확진자) 시험 응시 가능 의사소견서

구 분	제출서류	유의사항
확진(재택치료)	①, ②	1. 본인 해당되는 서류 미제출시 별도시험 접수 미인정 2. 시설 내 응시는 시험운영본부 사정으로 제한될 수 있음
확진(병원·생활치료)	①, ②, ③	
자가격리자	①, ②	

※ 신속항원검사(자가진단키트) 양성이고, 시험일까지 코로나19 PCR 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응시자는 ①, ② 서류 제출

5. (시험안내) 시험응시 신청자에게 개별 유선 통보

6. (유의사항) 확진 및 자가격리자 방역지침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, 허위 검사서류를 제출한 응시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타. 기타 문의는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람

- 필기시험: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☎ 044-205-7287~7294
  - 실기시험: 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 ☎ 041-840-6825
  - 인증서 발급: 소방청 119구조과 ☎ 044-205-7618
- <문의방법> (평일 근무시간 09:00~18:00 / 점심시간 제외)



**【서식 1】**

**필기시험 문제문의서**

문 제 문 의	성 명		응시번호	
연 락 처	휴 대 전 화			
	전 자 우 편			
응 시 분 야	응 시 시 도			
	응 시 분 야			
문 의 과 목	해 당 과 목			
	문 향 번 호	번		

<출제문제>

<사유 및 관련근거> - 사유 및 관련근거 반드시 기재

<응시자 의견>

## 응시원서 기재사항 정정신청서

### 1. 접수자 인적사항

시 험 명		응 시 계 급	
성 명		응 시 번 호	
전 화 번 호		휴 대 전 화	

### 2. 정정 신청 내용

구 분	정정 전	정정 후
성 명		
주 민 등 록 번 호		

### 3. 정정 사유

#### 4. 첨부: 주민등록초본(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)

(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 전후 사실이 확인 가능할 것)

2022년    월    일

신청자:

서명 또는 인

**소방청장 귀하**

## 코로나19 별도시험 응시 신청서

**인적사항**

성 명		주 민 등 록 번 호	-
휴 대 전 화	- -	응 시 번 호	
현 주 소 지			
격 리 기 간		관 할 보 건 소 (담당부서 및 연락처)	
신 청 사 유			

**제출 서류**

※ 서류 제출현황 (제출시 에 ‘V’ 체크)

- ① 코로나19 별도시험 응시 신청서  (공통)
- ② 개인정보 수집·활용 동의서  (공통)
- ③ 의사 소견서(병원입원·생활치료센터 입소 확진자)

구 분	제출서류	유의사항
확진(재택치료)	①, ②	1. 본인 해당되는 서류 미제출시 별도시험 접수 미인정 2. 시설 내 응시는 시험운영본부 사정으로 제한될 수 있음
확진(병원·생활치료)	①, ②, ③	
자가격리	①, ②	
※ 신속항원검사(자가진단키트) 양성이고, 시험일까지코로나19 PCR 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응시자는 ①, ② 서류 제출		

※ 제출서류는 방역당국 지침 및 시험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상기 본인은 2022년 소방공무원 자격시험 응시를 신청합니다.

2022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신청자

서명 또는 인

○○○○ 귀하

[서식 4]

**개인정보 수집 · 활용 동의서(별도 시험용)**

코로나19 확진·자가격리자 등의 시험응시 여부 확인을 위하여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기본 개인정보 수집·활용

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	성명, 휴대전화, 주소
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	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. 다만,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시험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.

■ 고유식별정보 수집·활용

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	고유식별정보 항목 : 주민등록번호
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	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. 다만,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시험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.

■ 개인정보 제3자 제공

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	질병관리청, 관할 보건소 등
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	응시자 확진·자가격리 여부 확인
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	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휴대전화
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	5년
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	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. 다만,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시험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.

개인정보 제3자 제공, 기본개인정보·고유식별정보 수집·활용 동의 여부    동의  미동의

■ 개인정보 취급자

소속	직급	성명	연락처	이메일	개인정보보호 책임자

년    월    일

성명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서명 또는 인)

〇〇〇〇 귀하

##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

▼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,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, 마스크(KF94 이상, 코와 입 막음)를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.

※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하거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※ 마스크 분실 및 사용 중 훼손 등에 대비하여 마스크 여분 소지 권장

▼ 발열, 호흡기 증상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방역담당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
▼ 시험실 안·밖에서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▼ 시험시간 외에도 다른 응시자와 1.5m 이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▼ 응시자는 수시로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,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하시기 바랍니다.

▼ 응시자 개인이 사용한 휴지, 마스크 등은 시험장에 버리지 말고, 가방에 넣어 다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

▼ 시험시작 후 시험감독관이 실시하는 본인 확인 시에는 마스크를 잠깐 내리고 본인여부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.

▼ 시험에 응시한 응시자는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,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 시 질병청 콜센터(☎1339, 지역번호+120)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각 시험단계별 당일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전면통제합니다.